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4902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울

담당변호사 김영균

변론 종결 2021. 4. 21.

판결 선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0.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663,91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663,9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보증인 E(위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C(E의 처)가 A단체 무안군지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받음에 있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비율
1	2002. 8. 16.	농어촌구조개선자금	8,000만 원	8,000만 원	100%
2	2003. 2. 27.	농어촌구조개선자금	5,000만 원	4,500만 원	90%
3	2003. 6. 2.	기타재정운전자금	4,600만 원	4,140만 원	90%

나. 원고는 2005. 6.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3건의 대출원리금 합계176,804,6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 소외 법인, E,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51사건으로 위 구상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E에 대하여는 2016. 2. 12., 소외 법인과 C에 대하여는 2016. 9. 10. 각 확정되었다.

라. C는 2018.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6. 11. 피고에게 202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접수 제1469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인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20. 6. 2. 해지를 원인으로 2020. 6. 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2020. 5.20.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5. 6. 16.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6.1. 25.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E, C 부부에게 구상금의 상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고, C는 2019. 12. 30. 위 지급명령 등본을 발급받은 바 있으며, E는 2020. 10. 보증채무 감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 채무승인이 계속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 C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시효 완성 이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도 소멸시효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미